

HL만도 협력사 행동 강령

1. 목적

기후변화 및 ICT 기술 발전으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 이슈가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변화 극복을 위해 HL만도는 협력사와 함께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HL만도는 본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모든 협력사에게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HL만도가 제시하는 윤리, 환경, 인권, 안전, 공급망, 기술 분야에서 나아가야 할 지침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HL만도는 양사 모두 변화하는 생태계에 적응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본 행동 강령은 Drive Sustainability의 지속가능성 실무 지침(Global Automotive Sustainability Practical Guidance)을 기준으로 수립되었으며, UN 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 OECD Guideline과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의 행동규범을 참조하였습니다.

2. 적용 대상

본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은 HL만도와 모든 종류의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협력사입니다. 본 행동강령이 적용되는 협력사의 모든 임직원은 해당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는 동시에 본 행동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협력사와 거래하는 하위 업체 등 공급망 전반의 모든 이해관계자도 본 행동강령을 존중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전달 및 명시하여야 합니다.

3. 협력사의 책임 범위

HL만도 또는 HL만도가 지정한 제3자는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협력사의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 및 실사를 수행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HL만도는 협력사에게 개선을 권고 할 수 있습니다. 개선 활동은 협의를 통해 수립 및 시행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협력사는 공급망 내 위험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운영 및 관리

본 행동강령은 SC(상생협력)팀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완 및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 시, 개정된 내용을 HL만도 홈페이지(MAPs 등)에 공개합니다.

목차

I. 근로 조건 및 인권

1. 업무 환경

- 인도적 대우
- 임금과 복리후생
- 근로 시간

2. 인권 존중

- 강제 노동 및 인신매매
- 아동 노동
- 괴롭힘 금지
- 차별 금지
- 지역 주민 인권 보호
- 보안 관련 인권 보호

3. 결사의 자유

4. 정치 중립

5. 안전 보건

II. 기업 윤리

1. 공정 경쟁과 거래

- 부패, 부당 취득 및 뇌물
- 공정 경쟁 및 담합 금지
- 조세
- 수출 통제 및 경제 제재

2. 투명성

- 재정적 책임 및 자금 세탁 방지
- 문서화 및 기록
- 정보 공개

3. 회사 정보 및 자산 보호

- 개인정보 보호
- 정보 보안 및 지적 재산

4. 이해 충돌

5. 신원 보호 및 보복 금지

6. 위조 부품 금지

III. 환경

1. 기후변화 대응

-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 자원 절감 및 폐기물 관리
- 친환경 기술 개발 및 확산

2. 환경 영향

- 유해화학물질 관리
- 대기 배출
- 수자원 관리
- 생물 다양성
- 탄소 중립

IV. 공급망

1. 공급망 관리

- 협력사 관리
- 책임있는 원재료 조달

V. 관리 시스템

1. 법률

2. 교육

3. 사회 공헌

4. 동물 복지

I. 근로 조건 및 인권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 관계 법규와 고객 요구사항 준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세계인권선언(UDHR)과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s) 및 국제노동기구헌장(ILO)이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 업무 환경

인도적 대우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적인 기준 및 UN 세계 인권 선언(UDHR) 등에 따라 임직원은 기업의 사업운영, 제품 및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협력사, 고객, 동료 등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해를 끼치지 않을 책임이 있습니다.

임금과 복리후생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률 및 제도를 준수하여 최저임금, 초과 근로 수당,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항목 등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에 대한 보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 내역서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에게 자율적이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근로 시간

협력사는 최대 근로 시간 및 휴식 시간에 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며 임직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의 삶과 일의 균형을 위하여 연장근로를 지양하며, 피치못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2. 인권 존중

강제 노동 및 인신매매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국가의 노동법에 근거하여 강제 노동, 인신 매매를 포함한 노예 제도를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직원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합리적인 통지를 한 경우

에 언제든지 일을 그만두거나 퇴직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동 노동

협력사는 고용 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적 최소 고용 연령을 준수해야하며, 이를 위한 적법한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아동의 인격 발달과 교육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며 업무 수행을 위한 모든 단계에서 아동 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 해야합니다.

괴롭힘 금지

협력사는 임직원간 발생할 수 있는 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을 금지해야 합니다. 괴롭힘은 성희롱, 성적 학대, 폭력, 폭언 등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어 및 신체적인 행동을 포함합니다. 임직원은 존중과 신뢰 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차별 금지

협력사는 임직원의 다양한 배경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적, 인종,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임직원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 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지역 주민 인권 보호

협력사는 사업에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토지, 산림 등을 매입시 소유주를 비롯하여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과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 관련된 강제퇴거, 소음공해 등은 관련법을 준수합니다.

보안 관련 인권 보호

협력사는 보안 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결사의 자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에 따라 임직원의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임직원은 결사의 자유와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협력사는 임직원의 대표자와 단체 교섭 시, 교섭 사항에 대해 성실히 임해야 하

며, 임직원의 대표자가 부재할 경우, 각각의 개별 임직원이 자유롭게 교섭 사항을 건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4. 정치 중립

협력사는 정당과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임직원들의 정치 활동 참여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5. 안전 보건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안전보건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자연 재해, 질병, 사고 등으로부터 청결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담당자 선임, 예방 교육,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을 운영해야 합니다.

사업장 안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계, 설비, 기구의 안전성을 점검하며 이상이 발견 된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근무지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 장비를 제공해야 하며 임직원은 안전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II. 기업 윤리

협력사는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며 투명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 공정 경쟁과 거래

부패, 부당 취득 및 뇌물

협력사는 부패, 뇌물 등 불법적인 행동에 반대하며 이를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부패 방지를 위한 상담 및 신고센터를 운영해야 하며, 임직원은 사업과 관련된 기회 창출을 목적으로 한 뇌물, 금품, 호화로운 선물 등을 제공, 요구, 수락하면 안 됩니다.

공정 경쟁 및 담합 금지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공정거래법에 해당하는 법률을 준수하며 시장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 고객 등을 공정하고 진정성 있게 대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시장 경쟁 질서를 준수하며 가격, 생산량 조정, 업무 정보 교환 등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조세

협력사는 사회적 책임으로서 납세 의무를 인식하고, 해당 국가의 조세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세무 신고 및 납세의무를 이행하며, 세무당국에서 조사 요청 및 정보 요구 시,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수출 통제 및 경제 제재

협력사는 국경을 넘어 제품, 기술 등 이동을 규제하는 수출제한 관련 규정 및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무역을 제한하는 국가 및 개인과 거래를 하면 안됩니다. 또한 원산지 증빙 서류 등 수출입 관련 필요 문서를 절차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2. 투명성

재정적 책임 및 자금 세탁 방지

회계 담당 임직원은 국제회계기준(IFRS) 등에 따라 정확하게 회계 기록을 작성하며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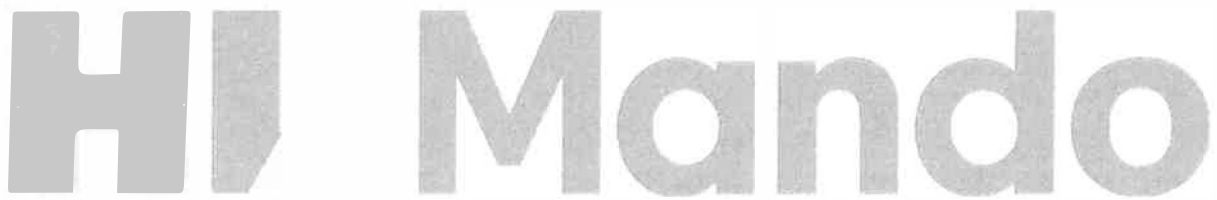
자금 세탁 행위는 탈세와 같은 범죄 행위의 결과로, 국가별 자금 세탁 방지법에 따라 국제적인 의무를 적용 받습니다. 협력사는 자금 세탁을 촉진하거나 지원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도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된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었는지 검토 및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문서화 및 기록

협력사는 각종 규제 준수와 회사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대응을 위해 은폐, 허위 등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문서를 작성, 유지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

협력사는 기업 활동, 재무상태, 실적, 소유권, 지배구조 등의 재무적·비재무적 정보를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 고객사, 투자자 등에서 정보 공개 요구가 있는 경우, 기밀 유출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 공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회사 정보 및 자산 보호

개인 정보 보호

협력사는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수집, 보관, 처리, 전송, 공유 시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객 및 협력사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수집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보 보안 및 지적 재산

협력사는 협력사의 정보 및 지식재산권 외에도 사업 중 취득한 이해관계자의 기밀 정보 및 지적재산권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고객사 및 협력사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 지식재산권도 이에 포함됩니다. 협력사는 임직원이 직무수행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협력사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또한 동의 하에 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해야하며, 협력사의 임직원이 회사 자산을 업무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해야합니다.

4. 이해 충돌

협력사는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경영 활동을 해야합니다. 친인척과의 거래, 회사의 자산 및 정보를 이용하여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창출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5. 신원 보호 및 보복 금지

협력사는 내부,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각종 고충처리 및 신고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신고자 및 제보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보복 행위, 차별 행위, 불이익 등의 2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며, 보호 조치 필요성이 있을 시, 이에 따른 활동도 이행하여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6. 위조 부품 금지

협력사는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품질 및 안전 관련 기준을 준수하며 승인되지 않거나 위조된 원재료, 부품의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원재료 및 부품의 생산,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Ⅲ. 환경

협력사는 환경관련 법규 및 국제 기준을 준수하며 환경문제가 기업의 필수 경영요건임을 인식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방조치 및 친환경기술개발 등 전 과정의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협력사는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및 공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원 절감 및 폐기물 관리

협력사는 지속 가능한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폐기물의 감소, 재사용, 재활용 등을 고려한 폐기물을 측정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제품 수명주기 동안 폐기물과 잔류 제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 직원 및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모든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며 매립 및 소각되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고 폐기물 재사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친환경 기술 개발 및 확산

협력사는 제품의 설계,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친환경 제품 소재 개발에 노력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협력사의 기술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친환경 기술 및 제품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환경 영향

유해화학물질 관리

협력사는 원재료 및 부품에 유해화학물질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자재는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식별하여 제조, 수입, 사용, 운반, 저장 관련 정보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비규제물질로 전환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대응 프로세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공, 담당자 교육 등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IMDS 시스템을 통해 모든 부품에 대한 원재료 데이터를 수집하고, 국가별 법규에 따라 분류된 위험 물질로 식별되는 모든 공정 화학 물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대기 배출

협력사는 공정상 생성되는 다양한 종류의 유기 화합물의 대기 배출가스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발생하는 모든 대기오염 물질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처리되어야 합니다.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수자원 관리

협력사는 수원 사용 및 배출을 측정하고 오염 경로를 통제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배출되는 모든 폐수의 수질 관리 및 물 사용 저감 활동을 수행하며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배출되는 수질 오염물질은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장 내 처리시설의 성능을 최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생물 다양성

회사는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환경 및 생물 다양성에 대한 사업의 잠재적인 영향을 인지하고 이해하므로 환경에 대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1) 협력사는 설비 및 사업장의 증설, 확대 시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요인을 예방하고, 최소화해야 합니다. 필요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 2) 협력사는 생물 다양성과 토지에 대한 보호와 관련한 국제협약(World Heritage areas, IUCN Category I-IV protected areas)을 인지하고, 해당 협약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국가 및 지방의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3) 협력사는 멸종 위기의 희귀종과 고유종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이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해야 합니다

탄소 중립

협력사는 국제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및 공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저탄소 에너지 소비를 위해 재생 에너지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인증서 구매, PPA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며, 사업장 여건에 적합한 재생 에너지 솔루션을 적용하여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파리 협정에 따라 1.5°C 이하 지구 온도 상승 억제를 위해 2045년까지 전 가치사슬에 걸친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글로벌 Scope 1,2,3 에 대해 대내외 요구사항 및 국제 기준을 고려하여 타당성 및 신뢰도 있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IV. 공급망

협력사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품질, 납품, 기술, 상생, 안전, 환경 등 협력사의 공급망 전 단계에서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 해야합니다.

1. 공급망 관리

협력사 관리

협력사는 하위 협력사와의 계약을 통해 협력 관계를 맺으며 부당 거래는 금지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하위 협력사에 법규를 준수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기업의 사회·환경적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기후변화, 안전, 보건, 노동, 인권 등 건강한

기업이 되기 위한 성장 기반 요소 관리를 권장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 대상 HL만도의 공급망 관리 관련 정책 및 규정도 함께 준수하도록 독려해야하며 정해진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 협력사 발생 시, 역량 강화 활동도 시행해야 합니다.

책임있는 원재료 조달

협력사는 하위 협력사로부터 조달 받는 모든 부품의 물질 및 재질 정보 검토를 통해 무기 자금, 인권침해, 환경 파괴 등과 관련된 책임광물 22종이 사용되지 않도록 책임 광물 정책을 수립하여 관리해야 하며, 상세 기준 및 위반 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 대상 광물 (책임광물 22종)

협력사는 다음의 광물군을 공급망 실사 및 관리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 분쟁광물 (4종): 주석(Tin), 텅스텐(Tungsten), 탄탈륨(Tantalum), 금(Gold)
- 배터리 소재 (6종): 코발트(Cobalt), 니켈(Nickel), 리튬(Lithium), 흑연(Graphite), 구리(Copper), 운모(Mica)
- 기타광물 (12종): 백금(Platinum), 팔라듐(Palladium), 로듐(Rhodium), 철광석(Iron Ore), 알루미늄(Aluminum), 아연(Zinc), 망간(Manganese), 크롬(Chromium), 티타늄(Titanium), 루테튬(Ruthenium), 오스뮴(Osmium), 이리듐(Iridium)

2) RMAP 인증 제련소 사용 및 개선 의무

- 협력사는 공급망 내에서 책임광물 이니셔티브(RMI)의 책임 광물 보증 프로세스(RMAP)에 따라 적합(Conformant) 판정을 취득한 제련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련소들의 현황은 RMI 공식 웹사이트(<https://www.responsiblebusiness.org>)에 게시된 최신 목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공급망 내에 미인증 제련소가 포함된 경우, 협력사는 2년 이내에 해당 제련소가 적합 판정을 받도록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위반 시 조치 및 계약의 해지

- 계약 해지: 협력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 기간 내에 RMAP 적합 판정을 끌어내지 못하거나, 공급망 내에서 분쟁 자금화, 아동 노동 등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경우, 당사는 별도의 개선 기간 부여 없이 즉시 거래를 중단하거나 공급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협력사의 책임광물 정책 위반으로 인해 당사에 손해(제3자와의 분쟁, 이자, 비용 등 포함)가 발생할 경우, 협력사는 이를 전액 배상해야 하며 당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 불이익 조치: 본 행동강령 및 확약 사항 위반 시, 향후 입찰 참여 제한 등 당사 정책에 따른 추가적인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정보 제공 및 실사 대응

- 협력사는 제련소 명칭, 위치, 원산지 증빙 자료 등을 상시 관리해야 하며, 당사가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는 제출된 자료를 정부 기관 또는 고객사에 제공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당사 또는 제3자의 현장 실사 요구에 적극 협응해야 합니다.

5) 하위 협력사 관리 및 통지 의무

- 협력사는 자신의 공급망 내 모든 업체가 본 원칙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공급망 내에서 관련 법령 또는 본 정책의 위반 사실이나 위반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협력사는 즉시 당사에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V. 관리 시스템

협력사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 운영 및 제품과 관련된 법률, 규정, 고객 요구사항과 HL만도 행동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법률

협력사는 사회적, 환경적 책임 및 사업 윤리를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사업 활동 과정에 있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률, 규칙 및 사내의 모든 규정,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교육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동등한 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부여하며 법률 및 규정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3. 사회 공헌

협력사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 및 환경 보전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4. 동물 복지

협력사는 동물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동물 실험을 수행해야 할 경우 동물 보호법 제 47조(동물 실험의 원칙)를 준수해야 합니다.

HI Mando

부 칙

1. 본 협력사 행동강령은 2022 년 4 월 1 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2. 본 협력사 행동강령은 2026 년 3 월 20 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3. 개정 이력

개정 이력		
Date	사유	변경 내용
2022-04-01	신규	신규
2023-02-03	최저임금 명시	임금과 복리 후생 항목 : 최저임금 등 내용 추가
2024-05-20	문구 추가	"반드시", "전달 및 명시" 문구 추가
	인권 존중	지역 주민 인권 보호, 보안 관련 인권 보호 내용 추가
	환경 영향	생물 다양성, 탄소 중립 내용 추가
	관리시스템	동물 복지 내용 추가
2026-03-20	공급망	광물 범위 확대 및 위반시 규제 내용 추가

HL만도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성현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강남일



위원: 김원일



위원: 정시영

